

의안번호	제3072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3. 13.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72호
----------	--------

제출연월일: 2026. 3. 13.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성차별적 용어를 중립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언어로 개선하여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용어 개선(안 제2조제1호)

-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1) 약칭 정비

가) 목적 규정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약칭을 하지 않은 용어는 약칭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띄어쓰기, 맞춤법 및 관용적 표현 정비(안 제2조~제8조)

3)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2888(2026. 1. 15.)호]

라. 기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20호

가) 예고기간: 2026. 1. 16.~ 2026. 2. 6.(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정기준 및 대상)”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을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그”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2조제2호나목 중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을 “행해지거나 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지역”을 “구역”으로 한다.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공청회”를 “사전에 공청회”로,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을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구역은”을 “구역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구”를 “군수는 출입구”로, “주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해당구역”을 “구역”으로, “충분히 안

내될 수 있는 개수를”을 “충분히”로 한다.

-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을 “군수는 청소년”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청소년통행금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경찰관서·학교·사회단체”를 “경찰서·학교·사회단체”로, “구축하여 해당구역을”을 “구축하여”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또는 “<u>청소년통행제한구역</u>”(이하 “<u>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u>”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u>----- ----- ----- -----.</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u></p>	<p>제2조(지정기준)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하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u>”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p> <p>가. <u>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u></p> <p>나. <u>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p>	<p>1.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u></p> <p>가. <u>성매매가 행해지거나, 그 ----- 구역</u></p> <p>나. <u>그 밖에 -----</u> ----- ----- <u>구역</u></p>
<p>2. <u>청소년통행제한구역</u></p> <p>가. (생략)</p> <p>나. <u>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u></p>	<p>2. <u>청소년 통행제한구역</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행해지거나 그</u> -----</p>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 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

-- 구역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주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 사전에 공청회-----
그 밖의 방법으로 -----
-----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
--.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구역을 -----
-----.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입구 -----
-----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 구역-----
----- 충분히 -----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

-----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 경찰서·학교
·사회단체 -----
----- 구축하여 -----
-----.

<삭 제>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